

등록번호	복지지원과-5282
등록일자	2016.3.4.
결재일자	2016.3.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통합관리팀장	복지지원과장	복지환경국장	
최유솔	문원정	代임태섭	03/07 이우룡	
협조	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	김화전 윤혜경		

제12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('16년 상반기) 계획



복지지원과
통합관리팀

제12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(‘16년 상반기) 계획

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확인·반영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함

I 확인조사 개요

- 근거 :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(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)
※ 2010년 행복e음 시스템 개통이후 총11회 정기확인조사 실시
- 조사기간 : 2016. 3. 2.(화) ~ 5.31.(화) 3개월간
- 조사대상 :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

▶13개 사업: ①기초생활보장 ②기초연금 ③장애인연금 ④차상위 장애수당
⑤차상위자활 ⑥차상위본인부담경감
⑦차상위자산형성지원 ⑧한부모가족지원
⑨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⑩~⑫타법의료급여
(⑩북한이탈주민 ⑪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, ⑫ 국가유공자)
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(연회, 매년 상반기)

- 조사항목
 - 건강보험 보수월액, 재산세 관련 정보등 65종의 공적자료
 - 134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조회결과
(관련법에 금융조사가 명시된 사업)
: 기초생활보장(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징구된 부양의무자포함)
기초연금, 한부모가족, 장애인연금, 차상위장애수당,
타법의료급여, 초중고 교육비지원

※ 소득재산 정보 기준일자 : 공적자료('16.1.31.), 금융정보('15.11.30.)

○ 확인조사 건수 : 1,634건 (갱신자료 통보건수)

(단위: 건)

사업명		통보건수	비고
계		1,634	
국민기초생활보장	기초생계	553	*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수기 처리없이 행 복e음시스 템 자동반 영하고 교육 청으로 전 송됨
	기초의료	210	
	기초주거	333	
	기초교육	62	
기초연금		281	
장애인연금		14	
차상위장애인		38	
차상위자활		6	
차상위본인부담경감		58	
차상위자산형성지원		7	
한부모가족지원		39	
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		24	
타법의료급여	북한이탈주민	5	
	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	-	
	국가유공자	4	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사업		-	

※ 2015.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실적 : 1,777건 통보되어 213건 중지, 170건 급여감소, 235건 급여증가 1,159건 현행유지

II

추진내용

□ 조사처리 방법

○ 공적·소명자료 반영 원칙

- 과거 직권·소명 자료는 모두 반영제외하고 신규 공적자료 모두 반영을 원칙

(직권자료는 유효기간 내인 경우만 반영)

○ 일용근로소득 조사 강화

- 금액반영 : 최근 두 분기의 월평균 소득금액 (6개월간 일용근로소득액 합산 후 6으로 나눈 금액을 반영 (2015. 1월~6월자료)
*사실확인을 통해 최근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최근 3개월의 소득액을 합산 후 나눈 월평균소득액을 반영
- 자료입수 기관 : 국세청, 고용노동부
- 소명처리 : 소득내용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(국세청)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(고용노동부)징구하여 반영
- 중점관리 : 2015년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월평균 20만원 이상 있다고 조회된자 ※ 사업장 급여 계좌 확인 및 통장징구 조사
※ 현금수령자 : 지출실태조사

○ 급여지급 원칙 준수

- 급여정지 :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급여 지급되나, 별도의 중지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4월급여 정지됨
- 급여변동 : 급여 감소 등의 사유로 급여변동이 되는 경우 3월부터 적용 되므로 사전 안내하여 민원 최소화
- 처리기한 : 확인조사 기간은 5월말까지이므로 그 전에 전자결재 완료

○ 소명사항 적극 반영

- 급여변동자에 소명기간 부여 : 5.31일 까지
- 대상자의 소명이 필요하여 기다리는 경우 현금급여는 정지 하되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
- 소명사실이 반영되어 계속 지급이 확정되면 미지급된 부분 소급해서 지급

○ 사후관리 철저

- 기타 복지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 연계 지원
-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(부양의무자 포함)
- 중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

□ 주요 변경 사항

○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인조사 최초 실시

- 내용 : 차상위 자산형성지원(희망키움통장Ⅱ)가입자 대상 정기 확인조사 최초실시
- 정비대상 및 기준 :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·사업 소득만으로조사 실시

○ 금융기관 이자·배당 소득 반영

- 배경 :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연 2천만원 미만의 이자·배당 소득미반영에 대해 지적하여 개선요구
- 내용 : 금융기간으로부터 계좌당 연 10만원 이상의 이자·배당을 제공 받아 보장별 공제액을 공제하여 이자소득에 반영

○ 고용부 일용근로소득 자료 반영

- 배경 : 사업주가 일용근로사실 신고를 국세청과 고용부로 각각 신고하는 불편을 어느 한 곳에 신고하도록 제도 개편
-> 이에 따라 국세청,고용부의 일용근로소득 원천자료를 각각 행복e음과 직접연계하여 조회하도록 개선

○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단위 자료 입수 반영

- 기존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십만원 단위로 제공되어
민원발생됨 : 원단위 실제금액으로 제공받아 반영

- 사업부서 : 보장중지, 급여변경 결정 및 결정사항 통보, 보고사항 취합 및 보고(5.31일자로 보장결정 완료)

- 동주민센터 : 1차 민원대응, 필요자료 징구, 대민 접촉업무 협조, 소득재산 관련 변동사항은 통합관리팀에 전달하여 처리